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2020 |
|----------|------|

2017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청
- 나. 제안일 : 2017년 8월 14일
- 다. 회부일 : 2017년 8월 16일
- 라. 상정일 :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가. 제안이유

- 서대문구 지역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용공간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 청년사업, 공간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시설개요

| | | |
|-----------|--|--|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운영 | |
| 위 치 · 규 모 | 舊 안산치안센터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58-1 / 133.49㎡(지상 4층) 신지식인산업센터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 220㎡ | |
| 지 원 시 설 | 휴게공간,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연습·창작공간, 입주사무실 등 | |
| 위 치 도 |  |  |
| |  |  |

2)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2018.1.1.~2019.12.31)
- 위탁업무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시설 관리·운영 일체
 - 지역청년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 예술문화 놀이터 운영 : 창작연습실 및 공연전시공간 지원을 통한 청년문화 활성화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식·경험을 공유하는 모임 및 활동 지원

- 후생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지원 : 휴식·강연공간 제공 및 영화상영 등
-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
- 지역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동종 활동가들을 위한 정보공유 커뮤니티
- 커뮤니티별 강연·포럼·세미나 등 프로그램 운영
- 무중력지대 서대문 및 지역청년 정보공유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성

○ 소요예산 : 435백만원('18년도 예산편성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3)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19조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경험이 있고, 민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민간기관(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 다양한 민간 자원과 연계, 활용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의 창의적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무중력지대 서대문을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무중력지대 서대문 현황 | |
|--------------|--|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운영 |
| 위 치 · 규 모 | 舊 안산치안센터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58-1 / 133.49 m ² (지상 4층) 신지식인산업센터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 220m ² |
| 지 원 시 설 | 휴게공간,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연습·창작공간, 입주사 무실 등 |
| 위 치 도 |  <p>舊 안산치안센터</p> |
| |  <p>신지식인산업센터</p> |

- 본 동의안은 약 2년의 기간 동안(2018. 1. 1 ~ 2019. 12. 31) 무중력지대 서대문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2018. 1. 1 ~ 2019. 12. 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공모
- 사업비 : 연간 435백만원(2018년도 예산편성 추진)
- 위·수탁 사무
 - 지역청년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 예술·문화 놀이터 운영 : 창작연습실 및 공연·전시공간 지원을 통한 청년문화 활성화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식·경험을 공유하는 모임 및 활동 지원
 - 후생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지원 : 휴식·강연공간 제공 및 영화상영 등
 -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
 - 지역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동종 활동가들을 위한 정보공유 커뮤니티
 - 커뮤니티별 강연·포럼·세미나 등 프로그램 운영
 - 무중력지대 서대문 및 지역청년 정보공유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성

나. 무중력지대 서대문 관련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무중력지대는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활동연계를 통해 청년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의 소통 및 모임의 공간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무중력지대 대방과 무중력지대 G밸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이와 유사한 청년시설로 청년허브(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소재)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조성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무중력지대 성북, 서대문 등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등 청년시설을 비교해보면, 사업내용면에서는 청년 활동생태계 구축 등으로 유사하나 크게 대상과 운영시간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음.

〈청년공간지원 등 유사시설 비교〉

| 구 분 | 청년교류공간 | 무중력지대 | 청년허브 |
|-----------|--|--|--|
| 설 치 근 거 | 市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市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市 청년기본조례 제18조 (청년허브의 설치·운영) |
| 운 영 | 민간위탁(예정) | 민간위탁 | 민간위탁 |
| 조 성 규 모 | 거점(1개소) | 서울시, 자치구 구별 | 市の 중간지원 조직 |
| 주 이용대상 | 청년활동 그룹 ※ 국내·외 청년 | 청년(단체) | 청년(단체), 일반시민 |
| 이 용 시 간 | 365일, 24시간 운영 | 월~금 : 10:00~22:00 토 : 10:00~16:00(대방) | 월 ~일, 10:00~10:00 |
| 주 요 공 간 설 | 활동지원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휴게 카페, 나눔부엌 등) | 활동지원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휴게카페, 나눔부엌 등) | 다목적홀, 창문카페, 휴게공간, 세미나실 등 |
| 사 업 내 용 | - 청년활동생태계 구축협력서비스 제공 - 청년활동 그룹 간 교류 및 역량강화 - 청년문제 해결 프로젝트 및 연구지원 등 | - 청년활동생태계 구축협력서비스 제공 -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등 | - 청년 진로모색 및 학습경험 지원제공 - 청년 자립공존 및 공간·활동 지원 - 혁신사례 발굴 및 공유, 청년정책 의제발굴 등 |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¹⁾를 제시하고 있음.

1)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10.8.>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8.>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민간위탁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무중력지대 신규 설치를 위한 자치구대상 현황 조사(2016. 5~6) 및 자치구 신청공간 현장방문 및 평가검토, 선정·통보(2016. 7~8)이후 무중력지대(서대문)설치 관련 예산을 서대문구에 재배정하였고(2017.1.11)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경과 〉

□ 추진근거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33호, '15.11. 9)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2016년 서울청년의회 10대 정책제안('16. 8.)

□ 추진경과

- 공공유�휴시설 활용 '무중력지대' 설치공간 확보 추진('16. 3~6월)
- '무중력지대' 신규 설치를 위한 자치구대상 현황 조사('16. 5~6월)
 - 서대문구 유희공간 현황자료 제출(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23857호, '16. 5. 25.)
- 자치구 신청공간 현장방문 및 평가검토, 선정·통보('16. 7~8월)
- 무중력지대 추진 자치구 실무팀장 회의개최('17. 1. 4.)
 - 설치계획 및 운영방향 등 의견수렴
 - ※ 공간조성 : 예산재배정을 통한 자치구 추진(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2050호, '17. 1. 11.)

-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대상 시설운영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을 선정·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무중력지대의 조성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통해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추진근거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당해 민간위탁 운영근거로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10.8.>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8.>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하면, 민간위탁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중력지대의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7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19조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로 민간위탁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또한 제시된바 있음.

- 둘째,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무중력지대는 2곳(무중력지대 대방, 무중력지대 G밸리)이고, 새로 조성하려는 청년공간은 무중력지대 서대문, 양천, 성북으로 지리적 편중성 문제는 없는지 여부(참고 1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조성현황 참조)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중력지대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및 지역적 설치 기준이나 원칙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셋째, 이용자를 청년으로 한정하나, 청년이 아닌 미성년자, 고연령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 및 청년만의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넷째, 조성 예정 건물인 ‘舊 안산치안센터’는 구유재산으로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으나, 무상사용기간을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회신하고 있어, 서울시 재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청년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섯째, 조성 예정 건물인 ‘신지식인산업센터’ 공간 배치 현황을 보면 무중력지대 서대문과 50플러스센터, 노인회 지회 등이 함께 배치될 예정인바, 무중력지대 조성공간으로써의 적정성 여부와 타 시설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아울러, 무중력지대 서대문의 경우 타 무중력지대와 달리 2곳(舊 안산치안센터(구유재산, 홍제동 26-1), 신지식인산업센터(서울시재산, 홍은동 48-84))을 조성하는바, 두 공간의 연계성과 접근성에 대한 검토 및 구유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이 2년인 점, 2곳으로 조성할 경우 타 무중력지대보다 인건비 등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민간위탁금 산출기초〉

| | | | |
|-------------------------------------|--|---------------|------------------------------|
| ○ 금 액 : 435백만원('18년 예산편성 요구액) | | | |
| (단위: 천 원) | | | |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 434,856 | 206,000 | 97,356 | 131,500 |
| ○ 산출내역(안) | | | |
| 구 분 | 산 출 금 액 | | 주요내용 |
| 계 | 434,856 | | |
| 인 건 비 | 206,000 | | |
| 인력운영(전담인력) | 선장: 3,500천 원*1명*12개월= 42,000 매너저: 3,000천 원*4명*12개월= 144,000 | | 각종 수당 일체 포함 *기존 무중력지대에 준함 |
| 4대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20,000 | |
| 운 영 비 | 97,356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3,000천 원*12개월= | 36,000 | |
| 우편통신비 | 480천 원*12개월= | 5,760 | |
| 임차료(각종 장비 임차) | 900천 원*12개월= | 10,800 | |
| 수선유지비(시설관리) | 593천 원*12개월= | 7,116 | |
| 자산취득비(장비·물품 구입) | 450천 원*12개월= | 5,400 | |
| 용역비(청소, 주말·대체운영) | 1,950천 원*12개월= | 23,400 | |
| 회의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 등) | 300천 원*12개월= | 3,600 | |
| 소모품(사무용품, 복사지 등) | 240천 원*12개월= | 2,880 | |
| 여비(시내·외 출장) | 200천 원*12개월= | 2,400 | |
| 사 업 비 | 131,500 | | |
| 지역청년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 | 62,400 | |
| 청년 예술 문화놀이터 운영으로 청년문화 활성화 | 3,200천원*12= | 38,400천원 | |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00천원*12= | 24,000천원 | |
|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 | 48,000 | |

| 구 분 | 산 출 금 액 | 주요내용 |
|----------------------------------|----------------------|------|
| 커뮤니티 지원 | | |
| 지역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2,000천원*12= 24,000천원 | |
| 커뮤니티별 이용 프로그램 운영 | 2,000천원*12= 24,000천원 | |
| 청년 문화 복지 등 활동 지원 | 21,100 | |
| 무중력시대 세대문 및 지역청년 정보 공유 온오프라인 플랫폼 | 1,000천원*12= 12,000천원 | |
|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2,275천원*4= 9,100천원 |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2020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대문구 지역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용공간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 다. 청년사업, 공간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 | |
|-----------|--|--|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운영 | |
| 위 치 · 규 모 | 舊 안산치안센터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58-1 / 133.49㎡(지상 4층) 신지식인산업센터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 220㎡ | |
| 지 원 시 설 | 휴게공간,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연습·창작공간, 입주사무실 등 | |
| 위 치 도 |  |  |
| |  |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2018.1.1~2019.12.31)
- 위탁업무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시설 관리·운영 일체
 - 지역청년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 예술문화 놀이터 운영 : 창작연습실 및 공연·전시공간 지원을 통한 청년문화 활성화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식·경험을 공유하는 모임 및 활동 지원
 - 후생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지원 : 휴식·강연공간 제공 및 영화상영 등
 -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지원
 - 지역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동종 활동가들을 위한 정보공유 커뮤니티
 - 커뮤니티별 강연·포럼·세미나 등 프로그램 운영
 - 무중력지대 서대문 및 지역청년 정보공유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성
- 소요예산 : 435백만원('18년도 예산편성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및 제19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경험이 있고, 민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민간기관(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 다양한 민간 자원과 연계, 활용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의 창의적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공간지원팀 이 민 성(☎ 2133-6591)